

11 원리

ERIC에서 말하는 윤리는 상황과 무관하게 적당하고 안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규정과 행동 강령에 대한 절차적 준수 그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ERIC 접근방식은 연구자 자신의 지식, 신념, 가정, 가치, 태도 및 경험이 무수한 방식으로 윤리적 의사결정과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따라서, ERIC은 비판적 성찰; 문화, 분야 및 학제간 대화;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국제적인 협력, 학습 및 참여를 요구한다. 연구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ERIC은 연구자 및 연구 커뮤니티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은 개방적이고 성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연구 윤리의 관계적 차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요구한다. ERIC 접근방식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은 존중과 혜택, 공정성이다.

원리

윤리적 규범과 문제점은 아동 및 아동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태도, 가치 및 가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든 아동의 존엄성과 행복 및 권리에 대한 존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ERIC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원리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존중은 분야, 장소 또는 방법론적 방향과 상관없이, 아동의 연구 참여 성격과 조건에 관한 연구자들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필수적이다.

ERIC은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의 삶과 행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커뮤니티로서,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과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RIC 접근방식은 윤리적 규범과 사안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구자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힘과 대표성의 중요한 문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윤리적 규범은 아동 및 아동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태도, 가치, 신념 및 가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UNCRC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권리는 연구자들이 모든 아동의 권리, 행복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잘 전달받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여기는 ERIC 접근방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UNCRC는 ERIC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최초의 완전한 국제 법률 문서이자, 사실상 “보다 광범위한 철학적 관점의 법적 표현”이다(Lundy & McEvoy, 2012a, p. 77).^{vii} UNCRC는 개인이 아닌 정부(및 그 관계자)에 대한 일련의 의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UNCRC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연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하고 중요한 틀이 된다(Lundy & McEvoy, 2012b).

UNCRC는 ERIC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다.

UNCRC는 기관과 아동의 참여에 가시성과 적법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와 제공 권리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연구와 같은 활동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UNCRC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침하고 있지는 않지만,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s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의견)와 함께 읽어보면 연구 참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아동의 삶을 다루기에 충분히 유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Lundy & McEvoy, 2012a).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준을 받은 UNCRC는 윤리적으로 견실한 연구 개발과 수행에 대한 공동 노력을 촉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Ennew와 Plateau(2005)는 UNCRC의 네 가지 조항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참여 권리를 결합해 아동의 ‘적절한 연구 처우를 받을 권리’를 설명한다.^{viii}

이 저자들은 존엄성과 존중의 기본적인 인권 원칙과 더불어 아동의 ‘적절한 연구 처우를 받을 권리’에 동의하고, 아동의 연구 참여를 지지하며, 윤리적 전략의 수립을 모든 연구 설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든다.

윤리적인 연구는 아동의 삶과 경험을 결정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식과 성찰을 필요로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뮤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는 한층 폭넓은 문화, 사회, 정치 및 경제적 환경과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가 포함된다(연구자, 아동 및 청소년, 부모, 보호자, 부양자, 주요 인물·게이트키퍼, 기관 및 기금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는 아동의 정체성과 의사가 가정·부족·지역 공동체 환경 안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집단적 문화와 개인주의 및 독립이 강조되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모든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ERIC은 연구 의사결정에 길잡이가 되는 성찰적 과정을 제공한다. 또 연구 윤리의 관계적 차원, 즉 연구 과정에서 소통하거나 좋은 태도를 가지는 데 필수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국제적인 상황

그동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적인 연구가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과 준법에 따른 사례들을 소개하는 데 국한됐지만, 이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국제 단체와 연구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윤리적 지침의 개발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지금은 특정 분야, 지역 또는 방법론적 방향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국가 및 국제적인 지침이 존재한다.^{ix} 이러한 지침은 윤리적인 연구 관계에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향후 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조성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동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의 경험과 시각이 면밀하게 연구에 반영돼, 정확하고 문화적으로 고유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조사 결과의 가치와 유효성을 강화시킨다. 아동으로부터 입수한 체계적인 정보는 아동의 존엄성, 권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법률, 정책 및 관례를 강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의 연구 참여는 UNCRC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한 방법론적 중요성과 연구 조사 결과가 아동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아동의 보호 및 참여 권리를 옹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윤리적 지침과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주어진 연구 상황에서,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에는 아동에 대한 최상의 존중과 배려를 반영하는 원칙 및 관례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를 뒷받침하는 윤리적 규범은 변함이 없지만, 아동과 성인이 경험하는 문제들, 고려사항 및 느끼는 미묘한 차이는 서로 다르게 개념화되고, 그 결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특히 아동을 위한 윤리적 지침의 개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관계는 윤리적인
연구의 핵심이다.

아동의 연구 참여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조사 결과의
가치와 유효성을
강화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호와 참여: 성찰적 연구 접근방식

아동과 관련된 최근 연구는 한층 폭넓은 이론적·사회정치적·문화적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제고되면서, 다양한 연구 이념과 방법 및 관례가 혼재된 접근방식에서 윤리적인 접근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거의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시되던 이러한 연구는 아동이 처한 환경의 다양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제로 그 특징이 규명되는 환경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연구가 규제되는 정도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구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아동의 참여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만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아동이 취약한 존재로서, 연구자를 비롯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보호주의적 담론에 무게를 뒀다. 최근에는 아동의 주체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아동의 **참여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서, 윤리적 고려사항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보호와 참여는 아동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반되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 있다.

보호주의와 참여주의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고, ERIC 프로젝트는 양질의 연구 수행을 지원하면서 둘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아동의 보호와 참여를 상반되는 관점으로 여기기보다는, 아동의 능력과 의존성 및 취약성이 아동의 연구 참여 또는 배제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보다 성찰적·윤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가장 잘 뒷받침될 수 있다. 보호 및 참여를 비롯한 윤리적 문제가 일어나는 연구 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관계를 중요시 해야 한다. 따라서,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해결할 때 대화, 협력과 성찰적 관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ERIC 개론은 국제 연구 단체의 방대한 연구 및 협의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에서 새로 제시된 주요 권고사항 중의 하나는 전반적인 문화적 상황에서 정부 및 단체의 일상 연구 관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윤리적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존중, 혜택 및 공정성과 같은 몇몇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은 전반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동 관련 연구에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와 혜택**, **사전 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지불**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특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방법 이용, 상황 실시와 의도가 동기가 되는 프로젝트에 이러한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일종의 성찰적 참여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ERIC을 뒷받침하는 주요 윤리적 규범

ERIC 프로젝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익히 알고 있을 세 가지 핵심적인 윤리적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절차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존중
- 혜택
- 공정성

각각의 규범은 비판적 성찰, 논쟁과 토론의 가치가 있다. ERIC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연구자 및 아동의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의 의미와 적용에 연구자들과 연구 커뮤니티의 한층 성찰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상기 세 가지 규범에 역점을 두는 데 있어, 본 저자들은 기존의 윤리적 지침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침이나 관련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본 개론에서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윤리 체계는 이러한 규범들을 연구 출발점으로만 여기며, 그 해석과 적용의 중심이 되는 공유된 의견 교환에 입각해 다른 원칙을 추가 또는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존중

ERIC의 목적상, 존중은 관용 이상을 의미한다. 존중은 아동과 아동의 생활 환경을 중시하며,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연구에서의 존중은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ERIC은 연구에서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다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누가 아동인가;
-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적 상황은 어떠한가;
- 문화가 어느 정도 아동의 경험, 역량과 시각을 결정하는가.

여기에는 가족, 또래 및 사회 구조를 비롯한 지역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주관적이며 관계적인 경험이 포함된다. 존중하는 연구는 아동의 삶 가운데 위치하며, 아동의 경험과 시각이 고려돼야 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자와 아동, 아동과 그 지역 공동체 및 아동 간의 힘의 불균형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아동 참가자를 비롯한 잠재적 게이트키퍼 또는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여타 성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협의는 연구가 진행되는 문화적 상황에서 이뤄지며, 특히 연구자가 현지 상황에 '외부인'의 관점을 도입하는 경우 현지 생활 환경에서 아동의 위치에 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존중하는 연구는 연구 과정의 협의에 있어 집단적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중요시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존중은 권리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아동과 아동의 생활 환경을 중시하고,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능력,
의존성과 취약성이
아동의 연구 참여를 포함
하거나 배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존중은 아동이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구에 확대 적용된다.

아무런 해가 없다는 무해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과실 또는 태만 행위로 인한 아동의 피해 또는 부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연구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존중은 아동이 연구 과정의 **참가자**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아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윤리적 의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연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집단의 일원인 아동과는 별개로,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아동의 보호 및 참여와 관련해, UNCRC에 명시돼 있는 권리는 존중이 어디에 얼마나 필수적인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보호받을 권리라는 연구자들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의 참여 권리라는 연구자들이 아동을 중시하고 연구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며,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해 아동에게 참여 정보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존중된다.

혜택

혜택의 윤리적 규범에는 **무해성**과 **선행**의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무해성 아무런 해가 없다는 무해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과실이나 태만 행위로 인한 아동의 피해 또는 부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연구는 비윤리적이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 관례 및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만(Greene & Hill, 2005; Hinton, Tisdall, Gallagher & Elsley, 2008), 연구자들은 아동의 참여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음을 보장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견실하고 엄격해야 하며, 관련성이 있고 어떤 영향이라도 미쳐야 한다.

또한, 연구에서 아동을 배제시킴으로써 입는 피해는 지양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아동의 삶,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연구자가 떠난 후의 후속 결과 확인 외에도 참가자 모집 과정과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수집된 데이터의 해석과 분석 과정도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에 있어 아동 보호를 계획, 이행 및 전파 단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H. Fo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무해성의 원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성인과 아동 간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와 관련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UNCRC에 명시돼 있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동의 보호 및 참여 권리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아동에게 아무런 해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에는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다. UNCRC는 아동의 연구 참여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조항들은 연구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연성이 있다. 협약에 설명돼 있는 참여 권리는 아동의 참여를 고려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할 연구자들의 의무를 입증하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연구 참가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보유한 시민권자로 인정하고 아동과의 대화에 참여하면,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역량을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의 원칙은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아동의 지위, 권리,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의무를 가리킨다. 선행은 친절과 자선을 베푸는 행위 이상으로 해석되며, 연구 과정과 결과 모두에 긍정적인 혜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아동에 대한 정보 수집은 아동, 그 가정 및 지역 공동체가 해당 정보에 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야 한다(H. Fosheim, 사적 전언, 2011년 12월 14일). 또한 증거 기반의 정책 시행을 통해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연구 참가자로 참여하지 못한) 아동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의 의견과 경험이 가치 있고 존중된다는 기분이 들도록 배려와 주의 및 책임 있게 연구를 수행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이나 자원, 적절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아동과 지역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선행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혜택을 확인하고, 이러한 혜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연구 진행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성

공정성의 원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여러 차원에 대한 기반이 된다. 공정성은 연구자와 아동 간의 관계,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견 교환과 대화에서 비롯된다. 공정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성인·아동 연구 관계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힘의 불균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아동의 견해를 경청하고, 그러한 견해를 마땅히 고려해 아동의 의견에 반응하는 것은 연구 성과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UNCRC 12조에도 부합한다.^x

공정성의 원칙은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연구 혜택과 부담 간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Belmont Report, 1979). 아동을 항상 정당하게 대우하고, 연구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공정성의 개념은 연구에 포함시킬 아동과 연구에서 배제할 아동에 관한 연구자들의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 결정은 차별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명시된 연구 목적과 방법론적 선택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각 아동과 연구자 간의 관계만큼이나 연구 프로젝트와 보다 광범위한 정치 및 사회 분야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공정성은 또한 아동의 존중받는 윤리적 참여를 지원하는 물질과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연구 부담 및 혜택의 (재)분배와도 관련이 있다(Fraser, 2008). 공정성은 아동이 연구 대상이나 주체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연구와 그 결과를 전달하는 정책의 조언자이자 자문가로서 공개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는 결코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아동이 부당한 부담을 지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성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아동을 잠재적으로 지배하거나 아동의 자주적 결정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형화된 아동기에 대해 아동의 특정한 시각이

선행은 아동의 지위, 권리, 행복을 증진할 의무를 가리킨다.

연구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명백한 혜택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연구 진행을 재고해야 한다.

공정성은 아동의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힘의 불균형, 혜택과 피해의 분배 문제, 연구에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포함된다.

정당하게 아동을
대하는 것에는 부당한
제도와 정책 및 관행이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동을
직접 대할 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포함된다.

억제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Dahlberg & Moss, 2005). 누군가를 정당하게 또는 부당하게 대하는 여부의 문제는 아동을 직접 대할 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연구 프로젝트는 아동과 연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한 제도와 정책 결정 및 관행에도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은 연구자와 아동 관계만큼이나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 사이에서 존재하는 관계와 관련이 있다. 힘은 아동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과정과 전파 과정에서 아동의 다양한 견해와 혜택이 아동이 단순한 참가자이거나 연구자이든, 힘이 있거나 의사표현이 분명한 일부 아동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ERIC 접근방식은:

-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연구에 있어서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의사를 표현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여긴다.
- 잘 계획된 윤리적인 연구 상황에서 UNCRC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것처럼,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아동이 참여하는 모든 연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숙련된 성인 보호자의 협조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가정, 학교 및 지역 공동체의 상황을 포함해, 아동의 삶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개선에 중점을 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위의 사항에 비춰 볼 때 존중, 혜택 및 공정성이 잘 입증된 윤리적 규범을 비판적으로 적용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보다 성찰적인 접근방식과 의견 교환을 촉진시킨다.



^{vii} 인간으로서 가지는 지위 덕분에, 아동은 다수의 국제 인권 조약(예를 들어 ICCPR(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돼 있는 권리의 수혜자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목적상, 아동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국제 인권 문서인 UNCRC를 이용한다.

^{viii} Ennew와 Plateau(2004)가 조합한 네 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1조 - '민주주의 원칙'; 13조 - 표현의 자유; 36조 - 착취로부터 보호; 3.3조 - 아동의 배려와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의 역량.

^{ix} 9장 '참고자료'의 여타 윤리적 지침의 검토 참조.

^x 12조: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